|  |  |  |
| --- | --- | --- |
| **비 금융기구 지불서비스 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 령 [2010] 제2호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등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비 금융기구 지불서비스 관리방법》을 2010년 5월 19일 제7차 행장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장 周小川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지불서비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비 금융기구의 지불서비스해위를 규범화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등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비 금융기구 지불서비스라 함은 비금융기구가 수불인 지간의 중개기구로서 하기 통화자금 이체서비스의 일부나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인터넷 지불  (2) 선불카드의 발행과 수리  (3) 은행카드 수납증빙  (4) 중국인민은행이 확정한 기타 지불서비스.  이 방법에서 인터넷 지불이라 함은 공중인터넷이나 전용인터넷을 통한 수불인의 통화자금 이체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화 전신환, 인터넷 지불, 이동전화 지불, 고정전화 지불, 디지털TV지불 등을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선불카드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발행하여 발행기구 밖에서 상품 쇼핑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선불가치의 카드를 말한다. 여기에는 마그네틱 선, 칩 등 기술을 사용하여 카드, 암호 등 형식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를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은행카드 수납증빙이라 함은 판매점(POS) 단말기 등을 통하여 은행카드의 특약 고객을 위해 통화자금을 대리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비 금융기구가 지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서 규정한 《지불업무 허가증》을 취득하여 지불기구로 되어야 한다.  지불기구는 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지 않은 그 어떠한 비 금융기구나 개인이 지불업무에 종사하거나 변상적으로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지불기구 지간의 통화자금 이체는 반드시 은행업 금융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지불기구를 통하여 상호 통화자금을 유치하거나 기타 지불기구에 위탁하는 등의 형태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불기구가 은행업 금융기구 지간의 통화자금 이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불기구는 안전, 능률, 신의성실,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의 이익, 사회의 공공이익 및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지불기구는 돈 세탁 방지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고 돈 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신청과 인가**  **제7조** 중국인민은행은 《지불업무 허가증》의 발급과 관리를 책임진다.  《지불업무 허가증》을 신청 시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의 심사를 받은 후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방법에서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라 함은 중국인민은행의 부(副)성급 도시 중심지행 이상의 분지기구를 말한다.  **제8조** 《지불업무 허가증》의 신청인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합법적으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인 동시에 비 금융기구법인이여야 한다.  (2) 이 방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자본금 최저액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이 방법규정에 부합하는 출자인이 있어야 한다.  (4) 지불업무를 숙지하는 고위급 관리임원이 5명 이상 있어야 한다.  (5) 요구에 부합하는 돈세탁 방지조치가 있어야 한다.  (6) 요구에 부합하는 지불업무 시설이 있어야 한다.  (7) 건전한 조직기구와 내부통제제도, 리스크 관리조치가 있어야 한다.  (8)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와 안전 보장조치가 있어야 한다.  (9) 신청인 및 그 고위급 관리임원이 최근 3년 내에 지불업무를 이용하여 불법범죄활동을 하였거나 불법범죄활동에 지불업무를 제공하여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제9조** 신청인이 전국범위에서 지불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로 인민폐 1억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1개 성(자치구, 직할시)범위에서 지불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로 인민폐 3,00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한다. 등록자본금의 최저액은 실제 납입한 통화자본이여야 한다.  이 방법이 전국범위에서 지불업무에 종사한다는 데에는 신청인이 성(자치구, 직할시)을 벗어나 분지기구를 설립하여 지불업무에 종사하거나 고객이 성(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나 지불업무 수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등록자본금 최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지불기구의 업무범위, 경외출자인의 자격과 출자비율 등은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는다.  **제10조** 신청인의 주요출자인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합법적으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여야 한다.  (2)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 2년 이상 금융기구에 정보처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연속 2년 이상 전자상무활동에 정보처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어야 한다.  (3)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 2년 이상 이윤을 보았어야 한다.  (4) 최근 3년 내에 지불업무를 이용하여 불법범죄활동을 하였거나 불법범죄활동에 지불업무를 제공하여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이 방법에서 주요출자인이라 함은 신청인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출자인과 신청인의 지분권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출자인을 말한다.  **제11조** 신청인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록자본금, 조직기구 설치, 신청하는 지불업무의 내용 등을 명기한 서면신청서  (2) 회사의 영업허가증(부본)의 복사본  (3) 회사정관  (4) 자금 사정증명서  (5) 회계사사무소의 감찰을 받은 재무회계보고서  (6) 지불업무 사업성 보고서  (7) 돈세탁 방지조치 검수자료  (8) 기술안전 검측증명서  (9) 고위급 관리임원의 이력서  (10) 신청인과 그 고위급 관리임원에게 범죄기록이 없다는 증명자료  (11) 주요출자인 관련자료  (12) 신청 자료의 진실성 성명서.  **제12조** 신청인은 수리통지서를 입수한 후 규정에 따라 하기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등록자본금 및 주식구조  (2) 주요출자인의 명부, 주식비율 및 그 재무상황  (3) 신청하는 지불업무  (4) 신청인의 영업장소  (5) 지불업무 실시를 위한 기술안전 검측 인증증명서.  **제13조**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법에 따라 요구에 부합하는 각항 신청을 수리한 후 초심의견과 신청서류를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이 심사하여 인가하는 경우에는 ⟪지불업무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시한다.  ⟪지불업무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지불기구가 ⟪지불업무 허가증⟫ 기간만료 후에 계속 지불업무에 종사하고 저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지불업무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이 연기를 인가하는 경우 매회 연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14조** 지불기구가 하기 사항 중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중국인민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등록자본금 또는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2) 주요출자인을 변경하는 경우  (3) 합병하거나 분립하는 경우  (4) 업무유형을 조정하거나 업무범위를 개변하는 경우.  **제15조** 지불기구가 지불업무 종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지불업무 진행상황, 종지요구 및 그 원인을 명기하고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신청서  (2) 회사의 영업허가증(부본)의 복사본  (3) ⟪지불업무 허가증⟫ 복사본  (4) 고객의 합법적 권익보호방안  (5) 지불업무 정보처리방안.  종료를 인가한 경우 지불기구는 중국인민은행의 비준회답에 따라 종료작업을 완성하고 ⟪지불업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이 장에 규정이 없는 인가절차 사항은 ⟪중국인민은행 행정허가 실시방법⟫(중국인민은행 령 [2004] 제 3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감독과 관리**  **제17조** 지불기구는 반드시 ⟪지불업무 허가증⟫에서 인가한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인가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거나 대외로 업무를 발주하여서는 안 된다.  지불기구가 ⟪지불업무 허가증⟫을 양도, 대출, 대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지불기구는 신중성 경영요구에 따라 지불업무방법과 고객의 합법적 권익보장조치를 제정하며,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불기구는 지불업무의 요금종목과 요금기준을 확정하고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불기구는 그 지불업무의 요금종목과 요금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불기구는 규정에 따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지불업무 통계보고서와 재무회계보고서 등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불기구는 지불서비스계약서를 제정하여 그와 고객의 권리와 의무, 분쟁처리원칙, 위약책임 등 사항을 밝혀야 한다.  지불기구는 지불서비스계약서의 서식과 조항을 공개하는 동시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분지기구의 지사가 지불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불기구 및 그 분공사는 각각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불기구의 지사가 지불업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지불기구가 고객의 선지급금을 접수한 경우 수취한 지불서비스비용에 따라 계산서를 제시해야 하며, 접수한 고객의 선지급금 전액에 따라 계산서를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지불기구가 접수한 고객의 선지급금은 지불기구의 자유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지불기구는 고객의 지불지령에 따라 선지급금을 이체할 뿐이다. 지불기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객의 선지급금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5조** 지불기구는 고객의 지불지령에 하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불인의 명칭  (2) 확정한 금액  (3) 수금인의 명칭  (4) 지불인의 구좌 개설은행의 명칭이나 지불기구의 명칭  (5) 수금인의 구좌 개설은행의 명칭이나 지불기구의 명칭  (6) 지불지령 발송일자.  고객이 은행결산계정을 통하여 지불하는 경우 지불기구는 당해 은행결산계정을 기재해야 한다. 고객이 비 은행 결산계정을 통하여 지불하는 경우 지불기구는 고객의 유효 신분증의 명칭과 번호도 기재해야 한다.  **제26조** 지불기구가 접수한 고객의 선지급금은 상업은행에 개설한 선지급금 특별 예금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단 중국인민은행이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불기구는 1개 상업은행을 선지급금 관리은행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해 상업은행의 1개 분지기구에 1개 선지급금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불기구는 상업은행의 법인기구나 수권한 분지기구와 선지급금 보관 관리합의를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 의무,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지불기구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선지급금 보관 관리합의서와 선지급금 전용 예금계좌의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불기구의 분공사는 자신의 명의로 선지급금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며 접수한 선지급금은 지불기구가 개설한 선지급금 특별예금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불기구가 각종 선지급금 특별예금계좌의 지급준비금을 조정하는 경우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의 법인기구는 지불기구가 조정하려는 선지급금 특별계좌의 잔액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의견을 지불기구 및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에 고지하여야 한다.  지불기구는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의 법인기구가 제시한 확인의견서를 지참하고 선지급금 특별예금계좌의 지급준비금 조정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은 자기 기구에 예금한 고객의 선지급금 사용상황을 감독하고 규정에 따라 고객의 선지급금 보관관리 및 사용상황 등 정보자료를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 소재지의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 및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의 법인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은 제2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지불기구의 고객 선지급금 사용 신청이나 지령을 거부하여야 한다. 고객의 선지급금이 불법으로 사용되었거나 기타 이상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 소재지의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 및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의 법인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불기구가 실지 납입한 자본과 고객의 선지급금 일당잔액의 비율이 10%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방법에서 고객의 선지급금 일당잔액이라 함은 최근 90일내 지불기구의 매일 최종시점 고객 선지급금 총액에 근거하여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의 법인기구가 계산한 평균치를 말한다.  **제31조** 지불기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고객의 유효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 신분증명서류를 확인하고 고객의 신원관련 기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지불기구가 고객이 그 지불업무를 이용하여 불법범죄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의 지불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제32조** 지불기구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수단을 갖추고 지불지령의 완벽성, 일반성, 불가저항성을 보장하며 지불업무의 시간성, 정확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재난 복구처리능력과 응급처리능력을 갖추어 지불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지불기구는 반드시 법에 따라 고객의 상업비밀을 지켜야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4조** 지불기구는 고객신원의 기본정보, 지불업무정보, 회계서류 등 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 지불기구는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현지검사와 비 현지검사를 받고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검사를 거부, 저애, 도피하거나 관련 증거자료를 사칭, 은닉,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는 법률, 행정법규, 중국인민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불기구의 회사운영, 업무활동, 내부통제, 리스크상황, 돈세탁 방지활동 등에 대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현지검사나 비 현지검사를 진행한다.  지불기구에 대한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의 현지검사에는 《중국인민은행 범적검사절차 규정》(중국인민은행 령 [2010] 제1호)을 적용한다.  **제37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는 지불기구에 대한 현지검사 시에 하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불기구 직원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검사사항과 관련한 해석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사항과 관련한 서류, 자료를 조회, 복제하고 이전, 은닉 또는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서류와 자료를 봉인한다.  (3) 지불기구 고객의 선지급금 특별예금계좌 및 관련계좌를 검사한다.  (4) 지불업무 시설과 관련시설을 검사한다.  **제38조** 지불기구에 하기 상환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가 그 지불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권한을 가진다.  (1) 누적결손이 그가 실지 납입한 통화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상황  (2) 중대한 경영리스크가 발생한 상황  (3) 중대한 법률,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한 상황.  **제39조** 지불기구가 해산하거나 법에 따라 취소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청산사항은 국가의 관련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벌 칙**  **제40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의 임직원에게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을 위반하고 《지불업무 허가증》의 신청, 변경, 종료 등 사항을 심사 인가한 상황  (2) 규정을 위반하고 지불기구를 검사한 상황  (3) 알고 있는 국가비밀이나 상업비밀을 누설한 상황  (4)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속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상황.  **제41조** 상업은행에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그 고객의 선지급금 보관 관리업무의 잠시 중지나 종료를 명한다.  (1)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선지급금 보관관리나 사용상황 등 정보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상황  (2)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불기구의 선지급금 전용계정 준비금 조정행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  (3) 규정을 위반한 지불기구의 고객 선지급금 사용신청이나 지령을 거부하지 않은 상황.  **제42조** 지불기구에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가 그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방법 또는 리스크관리조치를 수립하지 않은 상황  (2)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치수속을 하지 않은 상황  (3)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  (4)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상황  (5)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변경수속을 하지 않은 상황  (6)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계산서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  (7)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상업비밀을 지키지 않은 상황.  **제43조** 지불기구에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그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그의 《지불업무 허가증》을 말소한다.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입건 조사하게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지불업무 허가증》을 양도, 임대, 대출한 상황  (2) 인가한 업무범위를 초월하거나 업무를 대외에 발주한 상황  (3) 선지급금을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고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은 상황  (4) 실지 불입한 통화자본금과 고객의 선지급금의 비율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  (5)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지불업무를 중단하거난 종지한 상황  (6) 관련 검사감독을 거부하거나 저애한 상황  (7) 지불기구의 안전한 운행을 위협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거나 지불시장을 해치는 기타 법률과 규정 위반행위.  **제44조** 지불기구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는 돈세탁 방지와 관련한 국가의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이 그 《지불업무 허가증》을 말소한다.  **제45조** 지불기구가 《지불업무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초월하여 지불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는 지불업무 중지를 명한다.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입건수사하게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사기수단 등 부당한 수단으로 《지불업무 허가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 및 50% 이상의 지분권을 소지한 출자인은 3년 내에 《지불업무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신청에 참여하지 못한다.  사기수단 등의 부당한 수단으로 《지불업무 허가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 중국인민은행 및 분지기구는 지불업무 중지를 명하고 《지불업무 허가증》을 말소한다.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입건수사하게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신청인 및 50% 이상의 지분권을 소지한 출자인은 3년 내에 《지불업무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신청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7조** 임의의 비 금융기구가 중국인민은행의 인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지불업무에 종사하거나 변상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가 지불업무 종지를 명한다.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입건수사하게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48조** 이 방법 시행 전에 이미 지불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 금융기구는 이 방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여 《지불업무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지불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9조** 이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0조** 이 방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中国人民银行令〔2010〕第 2 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等法律法规，中国人民银行制定了《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经2010年5月19日第7次行长办公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0年9月1日起施行。  　　　　　　　　　　　　　　　　　　　　　　　　 行长：周小川　　　　　　　　　　　　　　　　　　　　　　　　 二〇一〇年六月十四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促进支付服务市场健康发展，规范非金融机构支付服务行为，防范支付风险，保护当事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等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非金融机构支付服务，是指非金融机构在收付款人之间作为中介机构提供下列部分或全部货币资金转移服务：  　　（一）网络支付；  　　（二）预付卡的发行与受理；  　　（三）银行卡收单；  　　（四）中国人民银行确定的其他支付服务。  　　本办法所称网络支付，是指依托公共网络或专用网络在收付款人之间转移货币资金的行为，包括货币汇兑、互联网支付、移动电话支付、固定电话支付、数字电视支付等。  　　本办法所称预付卡，是指以营利为目的发行的、在发行机构之外购买商品或服务的预付价值，包括采取磁条、芯片等技术以卡片、密码等形式发行的预付卡。  　　本办法所称银行卡收单，是指通过销售点（POS）终端等为银行卡特约商户代收货币资金的行为。  **第三条**　非金融机构提供支付服务，应当依据本办法规定取得《支付业务许可证》，成为支付机构。  　　支付机构依法接受中国人民银行的监督管理。  　　未经中国人民银行批准，任何非金融机构和个人不得从事或变相从事支付业务。  **第四条**　支付机构之间的货币资金转移应当委托银行业金融机构办理，不得通过支付机构相互存放货币资金或委托其他支付机构等形式办理。  　　支付机构不得办理银行业金融机构之间的货币资金转移，经特别许可的除外。  **第五条**　支付机构应当遵循安全、效率、诚信和公平竞争的原则，不得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客户合法权益。  **第六条**　支付机构应当遵守反洗钱的有关规定，履行反洗钱义务。  **第二章　申请与许可**  **第七条**　中国人民银行负责《支付业务许可证》的颁发和管理。  　　申请《支付业务许可证》的，需经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审查后，报中国人民银行批准。  　　本办法所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是指中国人民银行副省级城市中心支行以上的分支机构。  **第八条**　《支付业务许可证》的申请人应当具备下列条件：  　　（一）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依法设立的有限责任公司或股份有限公司，且为非金融机构法人；  　　（二）有符合本办法规定的注册资本最低限额；  　　（三）有符合本办法规定的出资人；  　　（四）有5名以上熟悉支付业务的高级管理人员；  　　（五）有符合要求的反洗钱措施；  　　（六）有符合要求的支付业务设施；  　　（七）有健全的组织机构、内部控制制度和风险管理措施；  　　（八）有符合要求的营业场所和安全保障措施；  　　（九）申请人及其高级管理人员最近3年内未因利用支付业务实施违法犯罪活动或为违法犯罪活动办理支付业务等受过处罚。  **第九条**　申请人拟在全国范围内从事支付业务的，其注册资本最低限额为1亿元人民币；拟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从事支付业务的，其注册资本最低限额为3千万元人民币。注册资本最低限额为实缴货币资本。  　　本办法所称在全国范围内从事支付业务，包括申请人跨省（自治区、直辖市）设立分支机构从事支付业务，或客户可跨省（自治区、直辖市）办理支付业务的情形。  　　中国人民银行根据国家有关法律法规和政策规定，调整申请人的注册资本最低限额。  　　外商投资支付机构的业务范围、境外出资人的资格条件和出资比例等，由中国人民银行另行规定，报国务院批准。  **第十条**　申请人的主要出资人应当符合以下条件：  　　（一）为依法设立的有限责任公司或股份有限公司；  　　（二）截至申请日，连续为金融机构提供信息处理支持服务2年以上，或连续为电子商务活动提供信息处理支持服务2年以上；  　　（三）截至申请日，连续盈利2年以上；  　　（四）最近3年内未因利用支付业务实施违法犯罪活动或为违法犯罪活动办理支付业务等受过处罚。  　　本办法所称主要出资人，包括拥有申请人实际控制权的出资人和持有申请人10%以上股权的出资人。  **第十一条**　申请人应当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下列文件、资料：  　　（一）书面申请，载明申请人的名称、住所、注册资本、组织机构设置、拟申请支付业务等；  　　（二）公司营业执照（副本）复印件；  　　（三）公司章程；  　　（四）验资证明；  　　（五）经会计师事务所审计的财务会计报告；  　　（六）支付业务可行性研究报告；  　　（七）反洗钱措施验收材料；  　　（八）技术安全检测认证证明；  　　（九）高级管理人员的履历材料；  　　（十）申请人及其高级管理人员的无犯罪记录证明材料；  　　（十一）主要出资人的相关材料；  　　（十二）申请资料真实性声明。  **第十二条**　申请人应当在收到受理通知后按规定公告下列事项：  　　（一）申请人的注册资本及股权结构；  　　（二）主要出资人的名单、持股比例及其财务状况；  　　（三）拟申请的支付业务；  　　（四）申请人的营业场所；  　　（五）支付业务设施的技术安全检测认证证明。  **第十三条**　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依法受理符合要求的各项申请，并将初审意见和申请资料报送中国人民银行。中国人民银行审查批准的，依法颁发《支付业务许可证》，并予以公告。  　　《支付业务许可证》自颁发之日起，有效期5年。支付机构拟于《支付业务许可证》期满后继续从事支付业务的，应当在期满前6个月内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出续展申请。中国人民银行准予续展的，每次续展的有效期为5年。  **第十四条**　支付机构变更下列事项之一的，应当在向公司登记机关申请变更登记前报中国人民银行同意：  　　（一）变更公司名称、注册资本或组织形式；  　　（二）变更主要出资人；  　　（三）合并或分立；  　　（四）调整业务类型或改变业务覆盖范围。  **第十五条**　支付机构申请终止支付业务的，应当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提交下列文件、资料：  　　（一）公司法定代表人签署的书面申请，载明公司名称、支付业务开展情况、拟终止支付业务及终止原因等；  　　（二）公司营业执照（副本）复印件；  　　（三）《支付业务许可证》复印件；  　　（四）客户合法权益保障方案；  　　（五）支付业务信息处理方案。  　　准予终止的，支付机构应当按照中国人民银行的批复完成终止工作，交回《支付业务许可证》。  **第十六条**　本章对许可程序未作规定的事项，适用《中国人民银行行政许可实施办法》（中国人民银行令〔2004〕第3号）。  **第三章　监督与管理**  **第十七条**　支付机构应当按照《支付业务许可证》核准的业务范围从事经营活动，不得从事核准范围之外的业务，不得将业务外包。  　　支付机构不得转让、出租、出借《支付业务许可证》。  **第十八条**　支付机构应当按照审慎经营的要求，制订支付业务办法及客户权益保障措施，建立健全风险管理和内部控制制度，并报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备案。  **第十九条**　支付机构应当确定支付业务的收费项目和收费标准，并报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备案。  　　支付机构应当公开披露其支付业务的收费项目和收费标准。  **第二十条**　支付机构应当按规定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报送支付业务统计报表和财务会计报告等资料。  **第二十一条**　支付机构应当制定支付服务协议，明确其与客户的权利和义务、纠纷处理原则、违约责任等事项。  　　支付机构应当公开披露支付服务协议的格式条款，并报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备案。  **第二十二条**　支付机构的分公司从事支付业务的，支付机构及其分公司应当分别到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备案。  　　支付机构的分公司终止支付业务的，比照前款办理。  **第二十三条**　支付机构接受客户备付金时，只能按收取的支付服务费向客户开具发票，不得按接受的客户备付金金额开具发票。  **第二十四条**　支付机构接受的客户备付金不属于支付机构的自有财产。  　　支付机构只能根据客户发起的支付指令转移备付金。禁止支付机构以任何形式挪用客户备付金。  **第二十五条**　支付机构应当在客户发起的支付指令中记载下列事项：  　　（一）付款人名称；  　　（二）确定的金额；  　　（三）收款人名称；  　　（四）付款人的开户银行名称或支付机构名称；  　　（五）收款人的开户银行名称或支付机构名称；  　　（六）支付指令的发起日期。  　　客户通过银行结算账户进行支付的，支付机构还应当记载相应的银行结算账号。客户通过非银行结算账户进行支付的，支付机构还应当记载客户有效身份证件上的名称和号码。  **第二十六条**　支付机构接受客户备付金的，应当在商业银行开立备付金专用存款账户存放备付金。中国人民银行另有规定的除外。  　　支付机构只能选择一家商业银行作为备付金存管银行，且在该商业银行的一个分支机构只能开立一个备付金专用存款账户。  　　支付机构应当与商业银行的法人机构或授权的分支机构签订备付金存管协议，明确双方的权利、义务和责任。  　　支付机构应当向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报送备付金存管协议和备付金专用存款账户的信息资料。  **第二十七条**　支付机构的分公司不得以自己的名义开立备付金专用存款账户，只能将接受的备付金存放在支付机构开立的备付金专用存款账户。  **第二十八条**　支付机构调整不同备付金专用存款账户头寸的，由备付金存管银行的法人机构对支付机构拟调整的备付金专用存款账户的余额情况进行复核，并将复核意见告知支付机构及有关备付金存管银行。  　　支付机构应当持备付金存管银行的法人机构出具的复核意见办理有关备付金专用存款账户的头寸调拨。  **第二十九条**　备付金存管银行应当对存放在本机构的客户备付金的使用情况进行监督，并按规定向备付金存管银行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及备付金存管银行的法人机构报送客户备付金的存管或使用情况等信息资料。  　　对支付机构违反第二十五条至第二十八条相关规定使用客户备付金的申请或指令，备付金存管银行应当予以拒绝；发现客户备付金被违法使用或有其他异常情况的，应当立即向备付金存管银行所在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及备付金存管银行的法人机构报告。  **第三十条**　支付机构的实缴货币资本与客户备付金日均余额的比例，不得低于10%。  　　本办法所称客户备付金日均余额，是指备付金存管银行的法人机构根据最近90日内支付机构每日日终的客户备付金总量计算的平均值。  **第三十一条**　支付机构应当按规定核对客户的有效身份证件或其他有效身份证明文件，并登记客户身份基本信息。  　　支付机构明知或应知客户利用其支付业务实施违法犯罪活动的，应当停止为其办理支付业务。  **第三十二条**　支付机构应当具备必要的技术手段，确保支付指令的完整性、一致性和不可抵赖性，支付业务处理的及时性、准确性和支付业务的安全性；具备灾难恢复处理能力和应急处理能力，确保支付业务的连续性。  **第三十三条**　支付机构应当依法保守客户的商业秘密，不得对外泄露。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三十四条**　支付机构应当按规定妥善保管客户身份基本信息、支付业务信息、会计档案等资料。  **第三十五条**　支付机构应当接受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定期或不定期的现场检查和非现场检查，如实提供有关资料，不得拒绝、阻挠、逃避检查，不得谎报、隐匿、销毁相关证据材料。  **第三十六条**　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依据法律、行政法规、中国人民银行的有关规定对支付机构的公司治理、业务活动、内部控制、风险状况、反洗钱工作等进行定期或不定期现场检查和非现场检查。  　　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依法对支付机构进行现场检查，适用《中国人民银行执法检查程序规定》（中国人民银行令〔2010〕第1号发布）。  **第三十七条**　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可以采取下列措施对支付机构进行现场检查：  　　（一）询问支付机构的工作人员，要求其对被检查事项作出解释、说明；  　　（二）查阅、复制与被检查事项有关的文件、资料，对可能被转移、藏匿或毁损的文件、资料予以封存；  　　（三）检查支付机构的客户备付金专用存款账户及相关账户；  　　（四）检查支付业务设施及相关设施。  **第三十八条**　支付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有权责令其停止办理部分或全部支付业务：  　　（一）累计亏损超过其实缴货币资本的50%；  　　（二）有重大经营风险；  　　（三）有重大违法违规行为。  **第三十九条**　支付机构因解散、依法被撤销或被宣告破产而终止的，其清算事宜按照国家有关法律规定办理。  **第四章　罚　则**  **第四十条**　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的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违反规定审查批准《支付业务许可证》的申请、变更、终止等事项的；  　　（二）违反规定对支付机构进行检查的；  　　（三）泄露知悉的国家秘密或商业秘密的；  　　（四）滥用职权、玩忽职守的其他行为。  **第四十一条**　商业银行有下列情形之一的，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责令其限期改正，并给予警告或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中国人民银行责令其暂停或终止客户备付金存管业务：  　　（一）未按规定报送客户备付金的存管或使用情况等信息资料的；  　　（二）未按规定对支付机构调整备付金专用存款账户头寸的行为进行复核的；  　　（三）未对支付机构违反规定使用客户备付金的申请或指令予以拒绝的。  **第四十二条**　支付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责令其限期改正，并给予警告或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  　　（一）未按规定建立有关制度办法或风险管理措施的；  　　（二）未按规定办理相关备案手续的；  　　（三）未按规定公开披露相关事项的；  　　（四）未按规定报送或保管相关资料的；  　　（五）未按规定办理相关变更事项的；  　　（六）未按规定向客户开具发票的；  　　（七）未按规定保守客户商业秘密的。  **第四十三条**　支付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责令其限期改正，并处3万元罚款；情节严重的，中国人民银行注销其《支付业务许可证》；涉嫌犯罪的，依法移送公安机关立案侦查；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转让、出租、出借《支付业务许可证》的；  　　（二）超出核准业务范围或将业务外包的；  　　（三）未按规定存放或使用客户备付金的；  　　（四）未遵守实缴货币资本与客户备付金比例管理规定的；  　　（五）无正当理由中断或终止支付业务的；  　　（六）拒绝或阻碍相关检查监督的；  　　（七）其他危及支付机构稳健运行、损害客户合法权益或危害支付服务市场的违法违规行为。  **第四十四条**　支付机构未按规定履行反洗钱义务的，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依据国家有关反洗钱法律法规等进行处罚；情节严重的，中国人民银行注销其《支付业务许可证》。  **第四十五条**　支付机构超出《支付业务许可证》有效期限继续从事支付业务的，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责令其终止支付业务；涉嫌犯罪的，依法移送公安机关立案侦查；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六条**　以欺骗等不正当手段申请《支付业务许可证》但未获批准的，申请人及持有其5%以上股权的出资人3年内不得再次申请或参与申请《支付业务许可证》。  　　以欺骗等不正当手段申请《支付业务许可证》且已获批准的，由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责令其终止支付业务，注销其《支付业务许可证》；涉嫌犯罪的，依法移送公安机关立案侦查；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申请人及持有其5%以上股权的出资人不得再次申请或参与申请《支付业务许可证》。  **第四十七条**　任何非金融机构和个人未经中国人民银行批准擅自从事或变相从事支付业务的，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责令其终止支付业务；涉嫌犯罪的，依法移送公安机关立案侦查；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章　附　则**  **第四十八条**　本办法实施前已经从事支付业务的非金融机构，应当在本办法实施之日起1年内申请取得《支付业务许可证》。逾期未取得的，不得继续从事支付业务。  **第四十九条**　本办法由中国人民银行负责解释。  **第五十条**　本办法自2010年9月1日起施行。 |